

사업장에서 산업보건관리를 해나가는 자료의 하나로서, 직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것은 우선 점검일람표라 할 수 있다. 손쉽게 이용하여 직장내의 미비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점검표는 매우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. 여기에서는 각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자, 작업관리자들이 작업환경에 따라서 적절히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연속 소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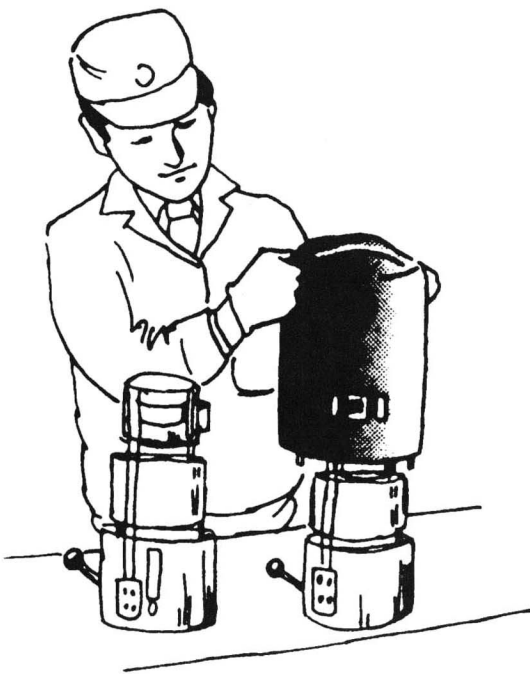
작업별 체크리스트 7

【작업방법을 중심으로 한 점검】

산 업현장에는 실제로 수많은 종류의 작업이 있다. 작업의 종류가 다르면 사용하는 기계도 달라지고, 작업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. 따라서 수많은 체크리스트 중에서도 실제로, 가장 중요하면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작업별 체크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런데 재해가 발생하는 2가지 요인에는 물적 요인과 인적 요인이 있다. 바꾸어 말하면 불안전 상태와 불안전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.

이중에서 기계설비 자체의 점검에 있어서는 '정기적 자가점검지침' 등 전용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그래서 본 작업별 체크리스트는 필요한 기기나 안전장치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인적 요인, 불안전 행동의 일소를 목적으로 해서 '작업방법'을 최고 중점사항으로 두고 체크포인트를 배열하였다.

분류하여 다른 작업도 전 업종에 공통되는 것 이외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의 주요한 작업을 선별하였다.





산소결핍위험작업점검표

구분		점검사항	양부	개선사항
환경관	설비·환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산소결핍위험장소 또는 이곳에 인접해 있는 장소에는, 출입금지 표시를 해놓았는가 ● 사다리, 섬유로프 등의 피난용구를 구비하고 있는가 ● 냉장실 등에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● 가스배출방지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● 가스배출에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●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● 지하실 등에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		
	환경측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작업개시전에, 공기중 산소, 황화수소의 농도를 측정하는가 ● 측정기록을 3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● 측정기구를 갖추고 있는가 		
	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메탄, 탄산가스가 분출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, 시굴(試掘) 등으로 가스의 유무 및 상태를 조사하고 있는가 ● 압기공법에 의한 작업을 하는 경우, 공기의 누출 유무, 정도, 농도 등을 조사하고 있는가 		
작업관	자격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산소결핍위험작업주임자를 선임하고 있는가 ● 작업주임자는 소정의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		
	작업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작업표준에 의거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가 ● 공기중 산소농도를 18%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환기를 시키고 있는가 ● 공기중 황화수소 농도를 100만분의 10 이하로 유지하도록 환기를 시키고 있는가 ● 공기호흡기 등의 보호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● 산소결핍증 등에 의해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대, 구명망 등을 사용하고 있는가 ● 공기호흡기나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작업개시전에 점검하고, 이상이 있으면 보수, 교체를 하고 있는가 ● 작업장 입실, 퇴실시에 인원을 점검하고 있는가 ● 근접한 작업장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가 ● 작업중, 감시인 등을 배치해 놓고 있는가 ● 용접에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● 설비의 개조 등 작업에서,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● 사고 등의 보고를 노동관서에 하고 있는가 		
	직장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작업개시점검, 정기점검,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가 ● 직장순시자를 정하고 있는가 ● 순시기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● 지난번의 순시에서 지적된 개선사항을 처리하고 있는가 		
건강관리	지찰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산소결핍증 등에 걸린 작업자를, 즉시 의사의 진찰 및 처치를 받도록 하고 있는가 ● 작업중 작업자가 숨이 차지거나, 기분이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는가 		



분진작업점검표

구 분		점 검 사 항	양부	개선사항
환경 관리	설비·환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대체물의 사용, 작업방법 개선, 기계 등의 개선, 격리실의 설치 등,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●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, 국소배기장치, 전체환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는가 ●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, 이를 보기쉬운 곳에 표시해 놓았는가 ● 작업장 이외에 휴식설비가 있는가, 또 매트나 의복용 브러쉬 등을 구비해 놓았는가 		
	환경측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6개월이내마다 1회,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가 ● 측정기록을 7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● 기준에 맞는 측정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가 ● 필요에 따라서 외부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고 있는가 		
	자주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1년이내마다 1회, 정기적으로 국소배기장치(제진장치를 포함)의 정기자주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● 정기자주검사 기록을 3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● 점검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보수하고 있는가 		
작업 관리	자격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특정분진작업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● 작업자는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		
	작업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작업장을 매일 1회 이상 청소하고 있는가 ● 퇴적분진제거를 위해 매월 1회 대청소를 하고 있는가 ● 작업장 바닥 등에 원재료의 분체가 흩어져 있지 않는가 ● 가제마스크 또는 마스크를 하지않은 작업자는 없는가 ● 호흡용보호구나 방진마스크 등을 사용하고 있는가 ● 방진마스크는 안면에 꼭 맞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● 가연성분진 등인 경우, 화재폭발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● 분진을 심하게 발산하는 옥외 또는 갭내 작업장에 있어서는, 주수 등에 의한 분진비산 방지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●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서는 보호복, 보호안경, 호흡용보호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작업자와 동수이상 구비해 놓았는가 		
	직장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작업개시점검, 정기점검,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가 ● 직장순시자를 정하고 있는가 ● 순시기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● 지난번의 순시에서 지적된 개선사항을 처리하고 있는가 		
건강 관리	건강진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분진작업종사자 등에게 진폐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가 ● 진폐건강진단의 결과, 유소견자에 대하여 X-선사진 등을 감독관청에 제출하고 있는가 		